의 료 기 관 평 가 인 증 원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25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환자안전법」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 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은 그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, 연간 현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위 호와 관련하여, 우리 원은 같은 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, '2025년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'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25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1부. 끝.

의 료 기 관 평 가 인 증 원 장

수신자 종합병원의 장,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

전결 12/01

팀원 **유범영** 팀장 **황진영** 센터장(직무대리) **서주현**

협조자

시행 중앙환자안전센터-1866 (2025.12.01.) 접수 ()

우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(여의도동) / https://www.koiha.or.kr/

전화 02-2076-0672 전송 02-6919-2976 / byyu@koiha.or.kr / 공개